

[별표 1의4] <개정 2010.3.19>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범위(제1조의6제2항관련)

예방접종의 종류	임 상 증 상	예방접종후증상발현까지의 시간
디티에이피(DTaP) 디티(DT) 티디(Td) 일본뇌염 신증후군 출혈열	1. 아나필락시스 2. 뇌염, 뇌증 3. 그 밖의 중추신경계 증상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증상으로 인한 후유증 5. 국소부위 종창 6. 전신발진 7. 39℃ 이상 발열 8.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24시간 이내 7일 이내 7일 이내 기한 없음 7일 이내 2일 이내 2일 이내 기한 없음
엠엠알(MMR) 홍역 풍진	1. 아나필락시스 2. 뇌염, 뇌증 3. 그 밖의 중추신경계 증상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증상으로 인한 후유증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24시간 이내 21일 이내 21일 이내 기한 없음 기한 없음
경구용폴리오	1. 급성 마비성 회백수염 면역 기능 정상자 면역 기능 이상자 2. 제1호의 증상으로 인한 후유증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35일 이내 1년 이내 기한 없음 기한 없음 기한 없음
비씨지(BCG)	1. 림프절 종창(직경 1cm 이상) 2. 접종부위 국소종양 3. 골염, 골수염 4. 전신 파종성 비씨지(BCG) 감염증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1년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기한 없음

※ 폴리오(주사용), B형간염, 수두, 인플루엔자, 장티푸스(경구용 및 주사용)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중 신고대상은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티에이피(DTaP)의 기준에 의한다.